

# 외국인 어학연수생에 관한규정

개정 2021.01.22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해전대학교의 외국인 어학연수생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‘외국인 어학연수생’(이하 ‘어학연수생’이라 한다)이라 함은 한국어교육을 목적으로 본교 한국어교육원에서 어학교육을 받는 학생을 말한다.

제3조(입학)

- ① 어학연수생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충족되는 자를 선발한다.
  - 1. 국내·외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, 한국의 초, 중, 고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였거나 이수 예정인자
  - 2. 부모와 본인 모두 외국인인 자
  - 3. 제1호 및 제2호에 충족하고 본교 한국어교육원 입학사정회의에서 통과된 자

제4조(학사 및 장학) 어학연수생은 본교 ‘한국어교육원 운영규정’에 따른다.

제6조(기숙사) 어학연수생은 반드시 연수기간 동안 본교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것을 권장 한다. <개정 2021.01.22.>

제9조(사전교육) 학교시설 이용과 교내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해 별도의 안내교육을 실시하고, 국내생활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.

제10조(어학연수생의 권리와 의무) 어학연수생은 입학 후 한국어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기간 동안에도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재학생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제11조(학생보험)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 또는 본교에서 권장하는 유학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.<개정 2021.01.22.>

제12조(준수사항)

- ① 어학연수생은 본교에서 수학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1. 본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.
  - 2. 어학연수생으로서의 신분과 목적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.
  - 3. 국내 체류기간 및 출입국에 발생하는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

임이 본인에게 있다.

제13조(변동신고)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에 의거 외국인학생의 변동 사실을 인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한다.

제14조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2021.01.22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0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